

[] 조 합
 [] 사업조합
 [] 연 합 회

설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팩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제81조·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 1부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1부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 세로 4cm) 각 1매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